

상세계획구역변경결정을위한의견청취의 건 심 사 보 고 서

1999. 11. 10
시 민 도 시 위 원 회

1. 심사경과

-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 1999년 11월 1일 마포구청장 제출
- 나. 회부일자 : 1999년 11월 1일
- 다. 상정일자 : 제66회 임시회 제2차위원회('99. 11. 10)
상정, 심사, 원안동의

2. 제안설명요지 (제안설명자 : 이관재 도시개발과장)

가. 제안이유

도시계획법 제11조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 상세계획구역(성산동 자동차정비단지) 변경결정(안) 입안을 위하여 도시계획법 제12조 제1항 규정에 의거 구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상정함.

나. 주요골자

○ 도시계획 변경결정 조서

구분	구역명	위 치	면적(㎡)	비 고
기정	성산동 자동차정비단지 상세계획구역	마포구 성산동 589번지 일대	54,000	
변경	성산동 자동차정비단지 상세계획구역	마포구 성산동 589번지 일대	49,896	편입도로 및 공원준치로 면적 감소(감4,104㎡)

○ 도시계획 입안사유

서울특별시고시 제1999-91호('99.4.2)로 도시계획 상세계획 구역 결정된 우리구 성산동 자동차정비단지에 대하여 서울 월드컵 경기장 주변 도로망 정비계획에 따라 35m로 확장되는 도로에 편입되는 면적 감소와 상세계획 구역내 도로계획시설(공원) 용지의 존치로 인하여 기 결정된 상세계획구역이 축소 되므로 상세계획구역 변경결정(면적 축소) 입안함.

○ 현 황

- 위 치 : 성산동 589번지 일대
- 면 적 : 54,000㎡ → 49,896㎡ (감 4,104㎡)
- 도시계획현황 : 유통상업지역, 상세계획구역
- 토지소유자 : 사유지 44필지 → 사유지 39필지

○ 추진경위

- '98.11. 9 : 도시계획 상세계획구역 결정을 위한 구의회 의견 청취
- '98.12. 7 : 자동차정비단지 용도제한(자동차정비업에 한함) 폐지
- '99. 4. 2 : 도시계획 상세계획구역 결정(서울시고시제 1999-91호)
- '99. 8. 4 : 월드컵경기장 주변 도시계획시설(도로) 결정
 - 기존 20m 도로를 35m로 폭원 확장(상세계획 구역 저축)
- '99. 9.29 : 상세계획구역 변경결정 방침
- '99.10.18 : 도시계획 상세계획구역 변경결정(안) 공람공고(서울특별시마포구 공고 제1999-345호)
 - 신문공고 : 한국일보, 동아일보, 한겨레신문
 - 공람기간 : '99. 10. 19 ~ '99. 11. 1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김건재 전문위원)

- 성산동 자동차정비단지 상세계획구역은 서울특별시고시제 1999-91호('99.4.2)로 도시계획 상세계획구역 결정된 구역으로서, 도시계획법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도시계획 상세계획구역(자동차정비단지) 변경결정(안) 입안을 위하여 구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제출됨.
- 도시계획 변경 내용을 보면, 성산동 자동차정비단지 상세계획 구역의 면적을 기정 54,000㎡에서 49,896㎡로 변경(감 4,104㎡)하고자 하는 것으로, 이는 '99.8.4 월드컵경기장 주변 도시계획시설(도로) 결정에 따라 기존 20m 도로가 35m로 폭원 확장되면서 상세계획구역 중 도로에 편입되는 면적감소와 동 구역내 도시계획시설(공원) 용지의 존치로 인하여 면적이 축소되는 것임.
- 성산동 자동차정비단지는 '77.2 서울시의 자동차정비업소 도심 외곽 이전계획에 따라 이전을 한 후 현재에 이르고 있으며, 그동안 용도지정 제한에 따라 사유재산권 침해 및 도시의 균형발전 저해 등 많은 문제점이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는 지역임. 향후 21세기 새서울타운 구상 및 월드컵 경기와 연계하여 동 지역을 주변 지원시설 배후단지로 조성할 필요성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는바, 집행기관에서는 서울시 상임기획단과의 유기적인 협의를 통하여, 상업지역 지정 및 자동차 정비 임대사업자를 위한 대책 마련 요구 등 우리구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해야 할 것으로 판단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

- 질의요지(김유현 위원) : 새터산밑 근린공원을 왜 상세계획구역에서 축소하는지?
- 답변요지(이관재 도시개발과장) : 공원용지로 면적은 648㎡이며 상세계획구역에 포함시킬수 없음.
- 질의요지(김유현 위원) : 15m 확장도로 보상절차는 언제쯤 가능한지?
- 답변요지(이관재 도시개발과장) : 서울시 계획에 의거 추진하는 사항으로 아직 결정안됨.
- 질의요지(김유현 위원) : 어떤 공원형태가 되는지?
- 답변요지(이관재 도시개발과장) : 새터산과 연계해서 녹지공간으로 조성할 예정임.
- 질의요지(이천규 위원) : 자동차정비단지는 다른곳으로 이전하는 것인지?
- 답변요지(이관재 도시개발과장) : 정비단지 이전여부는 서울시의 구체적인 계획에 의거 추진할 사항임.
- 질의요지(박상수 위원) : 공원에 의해 상세계획구역에서 제외되는 부분 공람공고에서 이의제기한 주민에 의해 철회는 안되는 것인지?
- 답변요지(이관재 도시개발과장) : 일부러 잘라낸 것이 아니고 원래 새터산에 포함되는 것으로 환경친화적인 녹지공산 확보차원에서 철회는 안됨.

5. 토론요지 : 없 음

6. 심사결과(의견) : 원안동의

7. 소수의견의 요지 : 없 음

8. 기타사항 : 없 음

상세계획구역 변경결정을 위한 의견 청취

의안번호	
------	--

제출년월일 : 1999. 11.

제 출 자 : 마포구청장

1. 건명 : 성산동 자동차 정비단지 상세계획구역 변경결정을 위한 의견 청취

2. 상정사유

도시계획법 제11조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 상세계획구역 (성산동 자동차정비단지) 변경결정(안) 입안을 위하여 도시계획법 제12조제1항 규정에 의거 구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상정함.

3. 도시계획 변경결정 조서

구분	구역명	위치	면적(㎡)	비고
기정	성산동 자동차정비단지 상세계획구역	마포구 성산동 589번지 일대	54,000	
변경	성산동 자동차정비단지 상세계획구역	마포구 성산동 589번지 일대	49,896	편입도로 및 공원존치로 면적 감소(감4,104㎡)

4. 도시계획 입안사유

서울특별시고시 제1999-91호('99.4.2)로 도시계획 상세계획구역 결정된 우리구 성산동 자동차정비단지에 대하여 서울 월드컵 경기장 주변 도로망 정비계획에 따라 35m로 확장되는 도로에 편입되는 면적 감소와 상세계획 구역내 도시계획시설(공원) 용지의 존치로 인하여 기 결정된 상세계획구역 이 축소되므로 상세계획구역 변경결정(면적 축소) 입안함 .

5. 현 황

- 위치 : 성산동 589번지 일대
- 면적 : 54,000㎡ → 49,896㎡ (감 4,104㎡)
- 도시계획현황 : 유통상업지역, 상세계획구역
- 토지소유자 : 사유지 44필지 → 사유지 39필지

6. 추진경위

- '98. 11. 9 : 도시계획 상세계획구역 결정을 위한 구의회 의견 청취
- '98. 12. 7 : 자동차정비단지 용도제한(자동차정비업에 한 함) 폐지
- '99. 4. 2 : 도시계획 상세계획구역 결정(서울시고시제1999-91호)
- '99. 8. 4 : 월드컵경기장 주변 도시계획시설(도로) 결정
 - 기존 20m 도로를 35m로 폭원 확장(상세계획구역 저축)
- '99. 9. 29 : 상세계획구역 변경결정 방침
- '99. 10. 18 : 도시계획 상세계획구역 변경결정(안) 공람공고
(서울특별시마포구 공고 제1999-345호)
 - 신문공고 : 한국일보, 동아일보, 한겨레신문
 - 공람기간 : '99. 10. 19 ~ '99. 11. 1